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2. 4. 3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 4. 11

다. 상정일자 : 제1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토요일 휴무제 도입)하고
-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연가수혜범위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아래산출방식)토록 함
$$12(\text{월}) - \text{당해연도 휴직기간}(\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12(\text{월})$$
-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01년 6월)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문제점등을 사전파악, 시책에 반영코자 시행예정인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휴직일

수에서 연가일수를 전부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 공제토록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사항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나, 토요일무제 시범실시에 대하여는 사전 홍보등을 통한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